

#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32
----------	-----

제출년월일 : 2021.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 지역 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업·농촌분야의 중간지원 조직,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원 및 사무위탁(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8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공모사업 선정 시, 2022년 당초예산 반영 추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2. 24. ~ 2021. 01. 13.)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59(2021.01.04.)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실-59(2021.01.04.)호)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가족복지과-1998(2021.01.14.)호)

##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 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평창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평창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추진위원회”란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군이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  
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군이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  
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  
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농  
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  
약사업, 농촌 협약사업 및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  
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5. 마을공동체 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6.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액션그룹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

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중간지원조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2. 중간지원조직 사무국 인건비 및 활동비
3.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4. 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 운영물품 지원
5. 군 소속 직원의 파견
6.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은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관련 지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조사 및 감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미리 서면으

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붙임]

##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 비용발생 요인 :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 중간지원조직 사무국 인건비 및 활동비
  -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사무국장 및 사무원 각 1명 채용, 일반운영비

#### 나. 추계 결과 (소요예산액 : 72,160천원)

-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2명 : 67,160천원
  - 사무국장 보수 37,700천원 = 145,000원(1일, 8시간)×5일×52주
  - 사무원 보수 29,460천원 = 113,310원(1일, 8시간)×5일×52주
- 일반운영비 : 5,000천원

#### 다. 채용조달 방안

- 자체 채용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연락처	(033) 330 - 136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72,160	72,160	72,160	72,160	72,160	360,800
인건비		67,160	67,160	67,160	67,160	67,160	335,800
일반운영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이	하	빈	칸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